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 중 "70"을 "90"으로 한다
제28조제2항제1호 중 "3억원"을 "보증 종류별 각 3억원"으로 한다.
제28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: 1,000억원
-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다.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 피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
- 제28조의5제2호 중 "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"를 "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연금의 방식 등)	제3조의2(연금의 방식 등)
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	①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	
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.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	3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	
결합한 방식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	나
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	
후연금 대출 한도의 <u>100분의</u>	<u>100분의 90</u>
<u>70 이내</u> 에서 해당 주택을 담	이 베
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	
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	
금액을 지급받는 방식	
제28조(신용보증의 한도) ① (생	제28조(신용보증의 한도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	②
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	
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	
고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	
따른다.	<u>.</u>

- 1.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: <u>3억</u> 원. 다만, 채권유동화를 목적 으로 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은 5억원으로 한다.
- 2. 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 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: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: 10억원
 - 나.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: 500억원

<신 설>

- 3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28조의2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)
 - ① (생략)
 -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"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 - 1. 2. (생략)

1: <u>보증</u>
<u>종류별 각 3억원</u>
2
フト
나
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임대
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
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
업자인 경우 : 1,000억원
3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]28조의2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
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)
① (현행과 같음)
2
1 ~ 9 (혀해과 간은)

3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이사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· 나. (생 략) <신 설>

4. ~ 7. (생략)

③ ~ ④ (생 략)

제28조의5(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)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(생략)
- 2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<u>담보주택에 거주</u> 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(月 <u>貰)를</u>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

J
<u>.</u>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
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
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
 4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5(예외적으로 저당권 설
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)
•
1. (현행과 같음)
2
<u>사장이 정하는 바에</u>
따라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
<u>보주택을 임대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정책과		
연 락 처	02-2100-2836	